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2023구합81466]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김태희 외 1인)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5. 31.

【주 문】

1. 피고가 2021. 12. 17.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증여세 108,383,84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증여세 146,869,12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증여세 166,901,78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증여세 177,907,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금전 대여

1) 유한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은 2002. 6. 26.부터 2011. 9. 9.까지 별지1 제1항 표 '대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게, 2005. 5. 24.부터 2009. 6. 30.까지 별지1 제2항 표 '대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주식회사 □□□(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2) 소외 1 회사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별지1 제1항 표 기재와 같고, 소외 1 회사의 소외 3 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별지1 제2항 표 기재와 같다(이하 소외 1 회사의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와 소외 4의 소외 1 회사·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 발행 주식 보유 현황

1) 원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 소외 2 회사 발행 주식의 70.4%, 소외 3 회사 발행 주식의 전부를 보유하였다.

2) 원고의 형인 소외 4는 2020년 말 기준 소외 1 회사 발행 주식의 44.25%를 보유하였다.

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소외 1 회사(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인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의 이익(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에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2. 17.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귀속연도증여세(가산세 포함, 원)처분근거 2017년108,383,840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2018년146,869,120 2019년166,901,780 2020년177,907,140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금전 대여

1) 유한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은 2002. 6. 26.부터 2011. 9. 9.까지 별지1 제1항 표 '대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게, 2005. 5. 24.부터 2009. 6. 30.까지 별지1 제2항 표 '대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주식회사 □□□(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2) 소외 1 회사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별지1 제1항 표 기재와 같고, 소외 1 회사의 소외 3 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별지1 제2항 표 기재와 같다(이하 소외 1 회사의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와 소외 4의 소외 1 회사·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 발행 주식 보유 현황

1) 원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 소외 2 회사 발행 주식의 70.4%, 소외 3 회사 발행 주식의 전부를 보유하였다.

2) 원고의 형인 소외 4는 2020년 말 기준 소외 1 회사 발행 주식의 44.25%를 보유하였다.

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소외 1 회사(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인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의 이익(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에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2. 17.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귀속연도증여세(가산세 포함, 원)처분근거 2017년108,383,840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2018년146,869,120 2019년166,901,780 2020년177,907,140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